

WE ARE YOUR DOL



근로기준과(Division of Labor Standards)

근로 기준 시행 절차 고지

불만 접수 및 검토:

개인이 고용 관련 불만 사항에 대해 **근로기준과**와 직접, 전화 또는 우편으로 소통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관련 문제가 우리가 개입할 법적 권한이 있는 문제인지, 즉 우리의 "관할권"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, 귀하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으로 귀하를 안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귀하의 불만이 근로기준과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**클레임 양식(Claim Form)**을 작성해야 합니다. 우리는 귀하가 제출한 클레임 양식을 검토한 후, 할당된 **문서 번호**를 우편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. "불만 사항"은 클레임 양식 작성 및 기록 시 "클레임"이 됩니다. 우리는 클레임 조사 중에 언제든지 귀하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클레임 조사:

각 클레임의 사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**근로기준과**가 사용하는 절차와 기법도 마찬가지로입니다. 또한 이 절차에 필요한 시간은 주로 고용주의 협력 정도, 정보 제공 요청시 응답 속도, 설득력있는 증거의 가용성(기록, 증인 등)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일반적으로 조사는 **근로기준과**가 전화, 서신 또는 둘 다를 통해 고용주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. 고용주가 첫 번째 서신(일반적으로 "**컬렉션 레터(Collection Letter)**")로 알려진 문서)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서신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. (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) 때로는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미팅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분쟁 또는 비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를 초청하여 **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(Compliance Conference)**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

조치:

조사 결과 위반이 존재하고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거나 배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 감독관(Commissioner of Labor)이 **준수 명령(Order to Comply)**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항소:

준수 명령에서 근로기준과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고용주는 산업 항소위원회(Industrial Board of Appeals)에 공식 청문회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. 이 항소 절차 동안 뉴욕주 노동부가 직원(들)을 대리합니다.

민사/형사 소송:

준수 명령에 대해 적시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고용주가 여전히 지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이 문제는 "**금전 판결(money judgment)**" 항목을 수반하는 민사 집행을 위해 법무장관실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증거가 충분하고 사건을 수락하기 위한 다른 특정 법적 기준(예: 고용주의 소재지)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법무장관에게 **형사 기소(criminal prosecution)**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 형사 기소 제기 대상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금전적 금액이 아니라 뉴욕주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.

통지할 사항:

귀하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클레임에 대한 지급금 수령,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연락 등 귀하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.